

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년 2월 15일
의회 운영 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2월 6일, 고영찬 의원 외 5명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2월 6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3년 2월 15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고영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자치법규 규제개선(2023. 1. 17.)에 따라 검사위원의 자격에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고,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(2022. 1. 13. 시행)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 인용 조문 현행화(안 제3조제2항, 제4조제1항, 제5조제2항)
- 검사위원의 자격에 거주지 제한 완화(안 제2조제2항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
(안 제1조, 제2조제2항, 제3조제1항·제5항, 제5조제1항·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규제개선(2023. 1. 17) 추진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에 거주지 제한을 완화(서울특별시 거주요건 삭제) 하고,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(2022. 1. 13. 시행) 전부 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임.
- 「지방자치법」 에서 결산검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거주 제한을 둔 곳도 있지만,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역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.
- 지역거주 제한을 두는 목적은 지역의 사정을 더 잘 알고,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, 또한 해당 지역인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, 이해관계가 걸려 제3자적인 입장에서 결산검사를 하여야 하는 데 오히려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을 것임.
-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
-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,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부합함은 물론,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